

[균등침해판단] 균등침해 성립요건 판단 -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지 않고 작용효과도

상이함, 치환도 용이하지 않음 - 균등범위에 속하지 않음: 특허법원 2019. 1. 31, 선고

2018허155 판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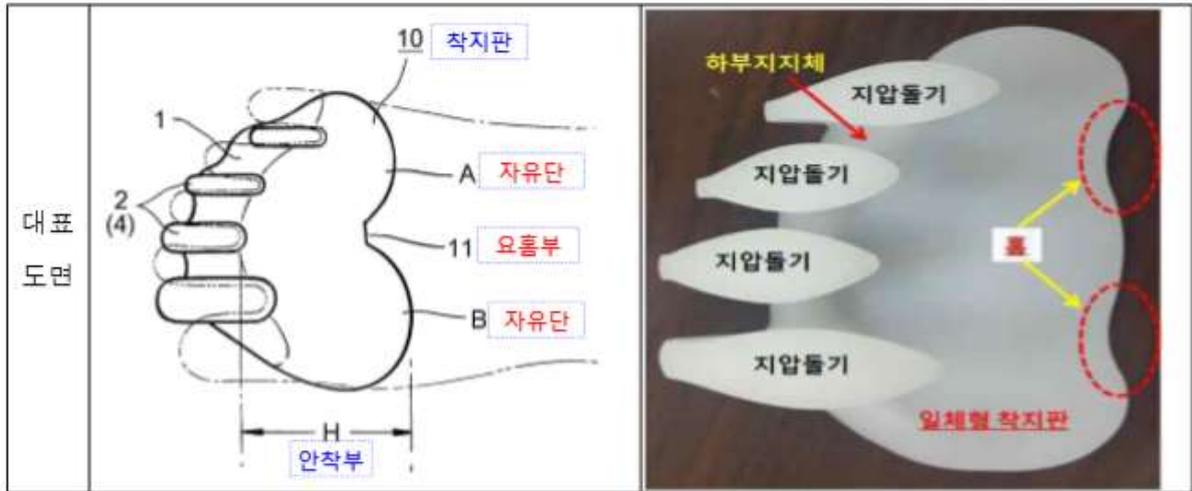


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대비

나.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

(1) 구성요소별 대비표

구성요소	이 사건 제2항 발명	확인대상발명
1	<p>발가락부 형태처럼 만곡형으로 형성된 하부 지지체(1)의 저면에 발에 눌러졌을 때 신축 탄성을 발휘하도록 계곡형 골(3)이 형성되고, 상면에는 발가락과 발바닥 경계부의 오목부에 접속되도록 만곡면으로 구성되며, 상기 하부 지지체(1) 상면에는 발가락 사이에 끼워 물려지도록 복수의 지압돌기(2)를 형성한 발가락 지압기에 있어서,</p>	<p>발가락부 형태처럼 만곡형으로 형성된 하부 지지체의 저면에 발에 눌러졌을 때 신축 탄성을 발휘하도록 계곡형 골이 형성되고, 상면에는 발가락과 발바닥 경계부의 오목부에 접속되도록 만곡면으로 구성되며, 상기 하부 지지체 상면에는 발가락 사이에 끼워 물려지도록 복수의 지압돌기를 형성한 발가락 지압기에 있어서,</p>
2	<p>상기 발가락 지압기를 발에 착용시 발바닥의 적어도 일부와 밀착되고, 보행시 발바닥에 눌러져 밀착된 상태로 고정되며, 밀착 고정력이 향상되도록 하부지지체(1)의 후단부에 실리콘 재질의 얇고 넓은 판형으로 구성된 일체형 착지판(10)을 형성하고,</p>	<p>상기 발가락 지압기를 발에 착용시 발바닥의 적어도 일부와 밀착되고, 보행시 발바닥에 눌러져 밀착된 상태로 고정되며, 밀착 고정력이 향상되도록 하부지지체의 후단부에 실리콘 재질의 얇고 넓은 판형으로 구성된 일체형 착지판을 형성하고,</p>
3	<p>상기 일체형 착지판(10)의 후단부 중앙에 오홈부(11)를 형성하여 착지판(10)의 후단부가 양쪽으로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단(A)(B)을 구비한 것</p>	<p>일체형 착지판 후단 좌우에는 '두 개의 얇은 홈'이 형성되고, 이 홈에 의하여 착지판의 후단부가 세 개로 분리된 모양으로 형성된다. 다만 이 홈이 얇아서 '후단부가 개별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렵도록' 형성된다.</p>



균등침해 성립요건 - 법리

확인대상발명,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, (1)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, (2)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, (3)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,

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(대법원 2018. 5. 30. 선고 2016후2119 판결, 대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2후1132 판결 등 참조).

구체적 사안의 판단

먼저 과제의 해결원리를 본다. 이 사건 제2항 발명에서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착지판 자체로 인한 기술적 특징에 있는 것이 아니라, 구성요소 3의 착지판 후단 중앙의 요홈부 및 요홈부에 의해 양쪽으로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단 구성과 그로 인해 발가락 지압기의 밀착력이 더욱 강화되는 특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.

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은 착지판 후단부의 중앙이 볼록하고 중앙의 양 옆이 오목하여 이 사건 발명과는 반대이므로 발바닥 접촉면적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착지판 자체에 의한 밀착력 외에 착지판 후단부 자유단 구성에 의한 밀착력 강화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.

작용효과면에서 이 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요홈부에 의해 착지판 후단이 양쪽으로 분리되고 자유단이 움직일 수 있어서 착지판 자체에 의한 밀착력 강화 효과 외에 추가적으로 유연한 밀착력과 부착력을 제공함을 알 수 있다. 반면, 확인대상발명은 요홈이 중앙에 있지 않은데다가 얇아서 후단부가 개별적으로 움직이기 어렵도록 형성되어 있으므로 착지판으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 외에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이 발명과 같은 작용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.

나아가 확인대상발명은 두 개의 요홈부를 설치하고 요홈부가 얇아 착지판 후단부가 움직이기 어렵도록 설계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설계는 착지판과 발바닥의 접촉면적이 오히려 줄어들게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, 통상의 기술자가 이 발명이 가진 본래의 핵심적 기술사상을 해치면서까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으로 용이하게 치환. 변경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.

따라서 양 발명은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지 않고, 차이점에 해당하는 구성요소의 작용효과도 상이할 뿐만 아니라, 치환. 변경하는 것이 용이한 것도 아니므로, 양 발명의 위 차이점이 균등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.

첨부: 특허법원 2019. 1. 31, 선고 2018허155 판결

변리사24년/변호사16년, 특허심판소송, 민형사소송, 손해배상, One-Stop Service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